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2소위02-산02호
민원표시 2BA-2207-0722285 손실보전금 지급 요청
신청인 A
피신청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의결일 2023. 1. 9.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2. 0. 0. 경기도 (주소 생략)에서 개인택시업(이하 '이전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다 2021. 0. 0. 서울로 사업장을 이전(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하여 영위하던 중 2022. 0. 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하 '이 민원 보전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규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이 민원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이 민원 보전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여 2022. 0. 0. 부지급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이 민원 사업장을 개업하게 된 데는 거래금액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이전 사업장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고 거래금액이 낮은 이 민원 사업장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발생한 차액을 딸의 이사비용에 부담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업장 소재지 이전 시 사업장등록사항 변경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폐업 절차를 밟았을 뿐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의 업종과 대표자가 동일하므로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보전금은 공고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등 기준이 적용되는바, 사업장 이동, 과세유형 변경 및 개인 사유 등으로 인해 이전 사업체를 폐업하고 변경된 사업자번호의 사업체로 이 민원 보전금을 신청할 경우, 현재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급요건을 판단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 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고자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를 하였고, 이 민원 보전금 지급방법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이 민원 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속지급'과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나. 이 민원 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하고,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며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금액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내용>

(단위 : 만 원)

구분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 ^{이상} ~60% ^{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다.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대상은 개업일별 매출규모 요건을 충족하고 2021. 12. 15. 이전 개업하여 2021. 12. 31. 기준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며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 국세청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라. 이 민원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른 개업일별 매출감소 판단 구간은 아래 <표2>와 같고 동일성을 인정할 경우 매출감소 판단 구간은 아래 <표3>과 같다.

< 표2.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매출감소 기준' >

개업일	매출액		비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20.12월~ '21.5월	'21.상반기	'21.하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표3. 동일성 인정시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매출감소 기준' >

개업일	매출액		비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19. 11월 이전	'19년	'20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1년	
	'19.상반기	'20.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상반기	
	'19.하반기	'20.하반기	
		'21.하반기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상반기	'21.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하반기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마. 신청인이 제출한 이전 사업장 및 이 민원 사업장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를 합산하여 보면 2020년 매출은 00,000,000원이고 2021년 매출은 00,000,000원이다.

<표4.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상의 매출내역>

(표 생략)

바.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 이를 살펴보면 이전 사업장 폐업일과 이 민원 사업장 개업일 사이 약 10여일의 공백기가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이 민원 사업장을 관할하는 B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간이었다고 2022. 0. 0. 우리 위원회에 진술하였다.

<표5.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업장 및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재사항 >

(표 생략)

사.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차량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신청인은 이에 대해 차량을 변경한 것은 관련 규정에 운행 연한이 있고 이전 사업장에서 운행하던 차량(이하 '기존 차량'이라한다)의 운행연한이 만료되어 이 민원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차량을 폐차하였다고 2022. 0. 0. 우리 위원회에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개인택시의 경우 운행 연한은 최대 9년까

지며, 자동차임시검사를 받아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인이 제출한 기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최초 등록일이 2010. 0. 0.로 기재되어 있고 2018. 0. 0. 경기도 C시장으로부터 1차 차령연장(2019. 0. 0.까지)허가를 받았고, 2019. 00. 0. 같은 시장으로부터 2차 차령연장(2020. 0. 0.까지)을 허가받았으며, 2020. 00. 0. 시행령개정에 따른 기본차령 연장으로 2021. 0. 0.까지 재차 연장되었고 2021. 0. 0. 폐차등록을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1] 및 [별지2]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피신청인은 단지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이 민원 사업장이 이 민원 보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사유를 불문하고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게 되어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사업장의 동일성 내지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재난지원금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신청인이 폐업 후 개업을 하게 된 경위, 폐업 후 개업하기까지의 공백 기간, 소재지, 업종, 대표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 점, ② 이 민원 사업장은 이전 사업장과 대표자, 업종, 영업의 행태 등이 동일하고 이전 사업장 폐업 후 이 민원 사업장을 개업하면서 발생한 공백 기간도 10여일로 짧아 두 사업장의 연속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③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차량을 폐차하였으나 택시영업에 있어 차량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비록 차량 변경이 있었다하더라도 변경 전후 영업형태나 영업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 동일성 인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차량변경의 원인이 관련 규정에 따른 운행 연한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였다면 차량변경 전후 사업장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④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폐업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절차를 통해서도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였던 점, ⑤ 신청인의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 매출을 살펴보면 <사실관계 마>와 같이 2020년 연매출 대비 2021년 연매출 감소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익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 을 이전하는 경우
 5. ~ 11. 생략
- ② ~ ⑤ 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3년으로 한다.

⑤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⑥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농어촌 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 종	사 업 의 구 분		차 령
승용자동차	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	9년

		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 동 차 대 여 사 업 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 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
특수자동차	자 동 차 대 여 사 업 용	캠핑용자동차	9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차종	사업의 구분		대상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경형·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승합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외의 사업용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와 전국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른 변경 가능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도의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가목 및 나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지거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라.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적용한다.

2. 차령 연장요건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
- 나.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차령 연장) ①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별지 제55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검사대행자를 통하여 해당 서식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2.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차량 파손에 따른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령만료일까지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관청이 차령만료일 이전에 인정한 경우: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한 날

③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차령 만료일·차령 연장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 및 1개월 이전에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게 할 수 있다.

[별지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공통지원요건

- 국제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사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불임1, 불임2, 불임3)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 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황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제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불임5)
-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교연)연습장, 체육장 •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 마사지사, 안마사, 상점·마트·백화점, 일용사업체 • 직할판매부서,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박물관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PC방,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마사지사, 안마사,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직할판매부서 •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박물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경륜식장, 강습식장, 동전자동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영화제독시실, 키즈카페,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국제회의장·박람회사당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불임5)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불임5)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불임4)
 - * 국제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를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을 적용

기준기간	비교기간	매출감소율	적용
'19년	'20년	70%	○
'19년	'21년	45%	

②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황지원	일반	상황지원	일반	상황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 ^{※1}	1,000	800	800	700	600
	△40% ^{※2} ~60% ^{※3}	800	700	800	700	600
	△40% ^{※4}	700	600	700	600	600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불임3)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 지원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 a + 0.5b + 0.3c + 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600 × 50%) = 1,30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원금액이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800 × 100%) + (700 × 50%) + (600 × 30%) = 1,330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800 × 50%) + (700 × 30%) + (600 × 20%) = 1,730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업종 (→ 불임6)
 -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공영계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3. 지원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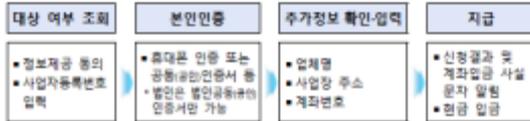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시 기	대 상	지급 시기
신속 지급	- 기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5.30.(월)~
확인 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대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6.13.(월)~
이의 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8월 중

1) 신속지급

- 대상 : 기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글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신청 절차】



2) 확인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대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3) 이의신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당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붙임 1 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 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프레스, 연박 및 석유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약품 불활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철사제품, 압류의 열상, 열합 및 용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랙터용 부품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류,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수선)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붙임 2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업(세탁 및 보비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벨트 봉이 및 용이제품 제조업	C17	
4. 저가 섬유 제조업	C24	
5. 천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8. 광업	B	
9. 식음료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크리스마스 및 장식용제품 제조업	C19	
14. 화장품 및 화장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인쇄기능제품 제조업(인쇄 및 사무 제품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부속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식점업	C11	
26. 여객 운 기류운송 서비스업	C18	
27. 의료용, 보철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치질,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K(E36 제외)	
32. 운수 및 운송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2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숙박(관광)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관광 및 호텔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붙임 4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개업일	매출액		비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19년		20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1년		
'19. 11월 이전	'19. 상반기	20. 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연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채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 비교	
		21. 상반기		
	'19. 하반기	20. 하반기		
		21. 하반기		
'19. 12월~'20. 11월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 상반기		21. 상반기
	'20. 하반기	21. 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연세)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연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채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 비교
		21. 하반기		
'20. 12월~'21. 5월	'21. 상반기	21. 하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연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채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 비교	
		21. 하반기		
'21. 6월~'21. 10월	'21. 7~11월	'21. 12월	·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 비교	
'21. 11월~'21. 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해당 사업체의 우점종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기업 역할부터 신청한 개월 수 격화(예 : '19. 9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frac{12}{9}$)
- 간이과세자 연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합입자의 '21. 7~11월 대비 '21. 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 「과세인프라」는 국제통일기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채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입액 확보 확인 후 지급(영입액 부채원을 위한 기준 충족 별도 안내 예정)

붙임 3 지원대상 판단기준

□ 매출규모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채시 (0원 포함) 지원 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②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1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③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 ^④ 모두 부채시 지원 제외
'21년 12월	소기업 규모로 추정	지원 제외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기업 역할부터 신청한 개월 수 격화(예 : '19. 8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frac{12}{8}$)
 ② 「과세인프라」는 국제통일기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상향지원 시 중소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①, ②)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①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

②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채시 (0원 포함) 지원 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②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0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③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 ^④ 모두 부채시 지원 제외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기업 역할부터 신청한 개월 수 격화(예 : '19. 8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frac{12}{8}$)
 ② 「과세인프라」는 국제통일기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제출 필요)

붙임 5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이상 감소) 현황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세세분류 기준

대분류	세세분류	대분류	세세분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도매 및 소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무도장 운영업		그 외 기타 무도장 소매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연세점	
	수영장 운영업		여행사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서적 임대업	
	자전거점 운영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볼링장 운영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육시설 운영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 유희 주점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일반 유희 주점업			
공연시설 운영업	기타 주점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생략주 전문점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휴양 콘도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공방 운영업		
기원 운영업		항안 내 여객 운송업		
연극단체		항공 여객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제조업	표면처리 및 특수 직물 제조업		
사격지 관리 운영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공연 기획업		방한 캠프용 안전지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정보통신업	비디오를 감상할 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영화관 운영업		육장업	
교육 서비스업	철수선 수선시설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마사지업
	학술재배 및 확산 비학술업			예식장업

붙임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임대 중개업
46107 중	예술용, 공예용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임대매 도매업
46399	임대 도매업 * 임대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유류제품 도매업 * 단, 인조유류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업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9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음료주점업
56212	무주류음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장치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모바일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 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주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9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률,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률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입정용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호신스 등)

표준산업분류	업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과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플라젝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나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청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청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종계탈, 키스탕,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무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추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스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피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1월 9일